



보도자료

MET FOR AM

보도 시점

배포시

배포

2024. 10. 10.(목)

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'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'가 개시됩니다.

-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실물이전서비스가 '24.10.31. 개시 -

개 요

I

퇴직연금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(해지)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'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'가 '24.10.31일 개시된다.

- ◆ 그간 '24.10.15일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 구축(8월중 완료) 후 테스트를 진행하여 왔으나,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(업계 공통)에 따라 당초 발표한 일정(10월중*)에 서비스를 개시
 - \star (참고) 정부 「연금개혁 추진계획」(9.4) 중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방안으로 "실물이전 시스템 구축(24.10~)" 포함

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 (현금화)에 따른 비용(중도해지 금리 등),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(기회비용)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.

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,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 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<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사업자 >

- ◆ 퇴직연금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이 아닌,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 등 **퇴직연금** 사업자와 상품제공기관의 자발적인 협조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총 44개 실물이전 대상 퇴직연금사업자 중 37개사(실물이전 대상 적립금의 94.2% 차지)가 10.31일 개시
 - ※ 실물이전 서비스 개통이 어려운 일부 사업자들*에 대해서는 **서비스 개시 지연사유** 및 **개시 예정일자**를 각 **퇴직연금 사업자**의 **홈페이지** 및 **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**에 **안내**할 예정
 - * '24.10.11일 현재 부산·경남은행, 삼성생명, 하나증권(이상 차세대 시스템 구축), 광주·iM은행, iM증권(이상 전산시스템 구축·테스트 지연) 등 7개사는 추후 서비스 개시 예정 ('붙임 1' 참조)

실물이전 신청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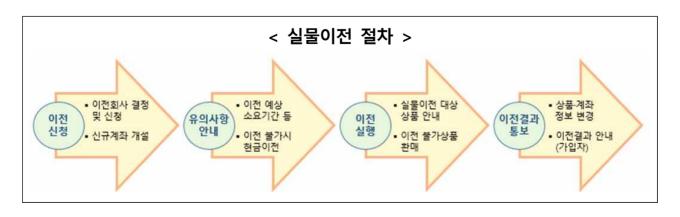
Ш

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(수관회사)*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.

* 단,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,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신청 가능

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*하여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,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,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.

* 가입자가 旣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(현금이전) 등



실물이전 범위 및 대상

Ш

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(예금, GIC, ELB·DLB 등), 공모펀드,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.

다만, 실물이전은 **동일한 제도 내**(DB↔DB, DC↔DC, IRP↔IRP)에서 이전 가능하고,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,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*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"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('붙임 2' 참조)"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
* 디폴트옵션 상품(전체 적립금의 5.7%), 퇴직연금(자산관리)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(16.5%),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(7.3%) 등

또한,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(수관회사)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(line-up)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.

즉,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,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.

Ⅳ 향후 계획

고용노동부·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"사전조회 기능"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,

중·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김부경 (044-202-7554)
(고용노동부)		담당자	사무관	이상전 (044-202-7657)
담당 부서	연금감독실	책임자	실 장	김도희 (02-3145-5180)
(금융감독원)	연금감독팀	담당자	팀 장	이상탁 (02-3145-5190)





붙임 1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일정*

※ 회사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	사업자		서비스 지연		
권역		10.31. 개시	개시 가능 일자	지연 사유	
은행 (13)	KB	0			
	신한	O			
	우리	0			
	하나 기업	0			
	<u>기원</u> 농협	0			
	<u> </u>				
	광주	×	'25.2월말	전산시스템 구축 지연	
	iM(舊대구)	×	′24.11.25.	전산시스템 구축・테스트 지연	
	부산	×	′25.4.29.	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	
	경남	×	′25.4.29.	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	
	전북 ¹⁾	0			
	제주 ¹⁾	0			
	KB	0			
	NH	0			
	대신 미래에셋	0			
	심성 삼성	0			
	 신영	0			
	신한	Ö			
증권 (15)	유안타	0			
	하나	×	′25.1.20.	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	
	iM(舊하이)	×	′24.11.11.	전산시스템 구축·테스트 지연	
	한국	0			
	한화	0			
	현대차 오리(蕃교스)	0			
	우리(舊포스) DB ¹⁾	0			
생보 (11)	DB ¹⁾	0			
	IBK ¹⁾	0			
	교보	0			
	동양 ¹⁾	O			
	미래에셋	0			
	삼성	×	′25.4.21.	전사적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	
	신한 ¹⁾	0			
	푸본 ¹⁾	0			
	하나 ¹⁾	0			
	한화 흥국 ¹⁾	0			
손보 (5)	DB ¹⁾	0			
	KB	0			
	롯데 ¹⁾	0			
	삼성	O			
	현대 ¹⁾	0			

(1) 13개 사업자는 보험계약 또는 언번들 계약만 취급하여 상품제공 업무와 관련한 시스템만 구축

(2) 한화손보는 '12년 이후 퇴직연금 신규사업 중단에 따라 시스템 구축 대상에서 제외

붙임 2 |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

【이전 범위】

- □ 동일한 제도 내(DB↔DB, DC↔DC, IRP↔IRP)에서만 이전 가능
 - DB 간, DC 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·수관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 가능
 - 개인이 투자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 이전만 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

【이전 대상】

- □ 특정금전신탁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(예금, GIC(신탁제공형), ELB·DLB 등), **공모펀드**(MMF 제외), **ETF** 등은 실물이전 가능
 - 다만, 실물이전이 가능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**이관회사**와 **수관회사**에서 **동일 상품**을 제공(라인업)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

【제외 대상】

- □ 일부 상품은 계약 형태,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실물이전 대상에서 제외* 되며, 특정 상황 발생 등에 따른 일부 상품**도 실물이전이 불가
 - * (계약 형태) 보험계약 형태의 퇴직연금(자산관리)계약, 언번들형 계약(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)
 - (상품 특성) 퇴직연금 사업자의 자체 상품(디폴트옵션), 지분증권, 리츠, 사모펀드, ELF, 파생결합 증권, RP, MMF, 종금사 발행어음
 - ** 상품제공수수료 부과상품(단, 수관회사의 판단으로 실물이전 가능여부 선택 가능), 임의해지 대상소규모펀드, 환매수수료가 있는 펀드, 압류 및 질권 설정 상품, 자사 원리금보장상품, 환매불가 펀드 등